사	규	번	호		
관	리	부	서		
능			급	일	반

감사위원회 규정



2021.03.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의 2및 제39조의3 제1항,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4. 이사의 보고 수령
 -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6.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7.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 8.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 9. 이사회의 소집 청구

- 10.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1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1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
- 1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
- 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견표명)

- 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내에 1인 이상을 간사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감사위원회와 임시감사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 시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 전자우편,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3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의 소집 청구
 - (2) 이사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6)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7)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 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전담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 위반사실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5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법률고문 등 외부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1주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7조(감사 체계)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원활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감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감사계획·조사·평가·보고·사후관리 기타감사와 관련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감사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전담부서 또는 감사 관련부서 등에서 진행하는 감사계획과 절차,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담부서 또는 감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시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기록의 신뢰성
 -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5. 회계방침의 계속성
 -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
-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열람)

-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및 직원 등과 협의하여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및 직원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조사)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만약 해당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의 조사)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의 조사)

- ① 위원회는 본사·지점·공장·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위원회는 본사·지점·공장·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사 또는 각 업무의 책임자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전담부서 또는 감사 관련 부서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

- ① 위원회는 회사 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위원 간 의견 교환)

- ① 감사위원은 이사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위원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는 제10조에 의한 회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

① 위원회는 회사 내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련 임직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직접 조사할 경우, 전담부서 또는 감사 관련 부서의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임직원의 조치 사항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이사 및 임직원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이사 및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 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 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 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절차
- 13. 보고서 일자
-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 15. 기타
 -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 조치 및 향후 계획 등)
 -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다. 권고사항

제27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할 수 있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8. 조직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28조(중요 회의의 출석)

-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29조(감사부설기구)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요청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전담부서의 책임자(또는 관리자) 임면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외부감사인

제3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 시간・감사 인력・감사 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 시간·감사 인력·감사 보수·감 사 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⑥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외부감사인의 해임)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및 외부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외부감사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 1.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2.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3.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4.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외부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5.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위원회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 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관계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3.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4. 기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외부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외부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라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 감사인'이라한다) 외에 다른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전기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감사인에게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를 청취함과 아울러 외부감사인에게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을 설명한 후 쌍방의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35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6장 보고

제36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의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규정의 개정)

감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21.03.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0일부터 시행한다.